

**제308회 시의회 정례회**

---

**2022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**

---

2022. 6. 14(화)

**공공개발기획단**

# 2022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, 2022회계연도 2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기준
  -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가능
  - ※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.

## 예산전용 내역 : 총 1건, 200,000천원

- 기타보상비(301-12) → 시설비(401-01) 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	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(도시개발 특별회계)	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			500,000	200,000	200,000	500,000
			일반보전금 (301)	기타보상금 (12)	200,000	-	200,000	-
			시설비(401)	시설비(01)	300,000	200,000	-	500,000

## 전용사유

- 삼표산업에서 공장 자진철거 후 부지활용 제안('22.1)에 따라 4자간 협의 등을 통해 정책전환(공원→부지활용) 결정('22.3)
- 따라서,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활용에 대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
-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설계공모 보상비 예산(2억, 기타보상비)을 시설비로 예산 전용 함